주체106(2017)년 제63권 제3호

민법상 의사표시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리 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39~140폐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 서 공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민사법률행위는 일정한 법적효과를 목적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한다. 대표적인 민사법률행위로 되는 계약과 일방적인 행위에는 모두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반영되여있다. 그러므로 의사표시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는것은 민사법률행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일정한 민사법률행위를 지향하여 표시하는 의사이다. 즉 의사표시는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일정한 방식으로 외부에 표시되는것을 의미한다.

의사표시는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민사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법률관계가 발생되거나 변경. 소멸되며 당사자들은 그와 관련한 민사적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된다. 표시된 의사가 곧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한다. 여기서 의사는 당사자의 내심적인 의사로서 외부 에 표현되기 전까지의 생각이나 태도, 립장을 의미한다. 표시는 의사의 외부적표현으로서 당사자의 내심적인 의사가 외부에 표명되는것으로 나타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표현된다. 그 과정을 보면 의사표시는 동기와 효과의 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를 거쳐 외부에 표현된다. 실례로 어떤 사람이 증여를 목적으로 책 10권의 구매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것을 들수 있다. 여기서 증여는 동기로 되며 증여를 목적으로 책을 구입하려는 의사는 효과의사로, 그러한 구매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려는 의사는 표시의사로, 상대방에게 구두나 문서 등으로 구매의사를 표현하는것은 표시행위로 된다. 그러므로 동기와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는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단계또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동기와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가 모두 의사표시를 구성하는것은 아니다. 만일 동기와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본다면 그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는 성립될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동기와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독자적인 구성요소로 보지 않고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을 의사표시로 인정하고있다. 이것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견해로 된다.

효과의사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적효과를 원하는 의사이다. 실례로 어떤 상품을 구입하려는 구매자의 의사나 상품판매로 해당 대금을 얻을것을 기대하는 판매자의 의사를 들수 있다. 비록 효과의사는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당사자의 내심적의사이지만 일정한 법적효과를 원하는 의사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적효과도 바라지 않는 의사는 효과의사로 될수 없다.

효과의사는 동기와 구별된다. 동기는 당사자가 효과의사를 가지도록 하는 계기로서 효과의사의 전제로 되지만 내용상 효과의사와 구별된다. 효과의사에는 일정한 법적효력이 부여되지만 동기에는 법적효력를 부여하지 않는다. 실례로 착오로 인한 민사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동기착오를 본질적인 착오로 인정하지 않는것을 들수 있다.

표시행위는 효과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당사자의 행위이다. 당사자의 효과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해 외부에 표현되며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표시행위가 없으면 당사자의 효과의사는 상대방에게 전달될수 없으며 아무런 법적효과도 발생시킬수 없다. 따라서 표시행위는 의사표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할수 있다.

의사표시는 우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로 구분할수 있다. 이것은 의사표시와 관련한 상대방의 존재유무에 따르는 구분이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해당 의사표시를 접수할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제의와 승낙, 채무의 면제, 계약의 해제, 대 리권의 수여 등이 속한다. 민사법률관계에서 의사표시는 대부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로 존재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법적효력은 해당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발생한다. 만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해당 의사표시는 상대 방을 구속할수 없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해당 의사표시를 접수할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는 유언행위와 소유권포기 등이 속한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법적효력은 해당 의사표시를 접수할 상대방이 없는것으로 하여 의사표시가 표명된 시점에서 즉시 발생한다. 이때 일정한 형식을 갖출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해당 형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의사표시는 또한 명시적의사표시와 묵시적의사표시로 구분할수 있다. 이것은 의사표 시의 방식에 따르는 구분이다.

명시적의사표시는 당사자가 구두나 서면과 같은 명백한 방식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명시적의사표시는 법이 정한 경우 반드시 해당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실례로 법인들사이의 계획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부동산거래를 공증받을데 대한 법적요구 를 들수 있다. 만일 법적요구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적효력을 부 여하지 않는다.

묵시적의사표시는 당사자가 구두나 서면이 아닌 일정한 행위방식으로 표시하는 의사이다. 실례로 당사자가 려객뻐스에 오르면서 표를 내는 행위와 선점, 무임관리 등을 들수 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법이 정하거나 거래관습,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침묵은 일반적으로 해당 의사표시의 거절로 인정된다.

의사표시는 또한 독립적인 의사표시와 독립적이 아닌 의사표시로 구분할수 있다. 이

것은 의사표시로 인한 법적효과의 발생여부에 따르는 구분이다.

독립적인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실례로 채권자의 채무면제나 유언자의 유언 등을 들수 있다. 독립적인 의사표시는 당사자일방이 하는 의사표시로서 직접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독립적이 아닌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적효과를 발생시킬수 없는 의사표시이다. 실례로 계약당사자들사이의 계약체결과 채무의 이전 등을 들수 있다. 독립적이 아닌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는 법적효과를 직접 발생시킬수 없으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되여야 한다.

의사표시는 또한 진실한 의사표시와 진실치 못한 의사표시로 구분할수 있다. 이것은 의사표시의 진실성여부에 따르는 구분이다.

진실한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자원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의사표시이다. 실례로 법적요구에 부합되게 이루어진 계약체결이나 유언 등을 들수 있다. 진실한 의사표시는 의 사표시의 무효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진실한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 면 그에 기초하여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진실치 못한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자원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표시이다. 실례로 사기나 착오, 강요로 인한 의사표시를 들수 있다. 진실치 못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당사자가 취소를 주장할수 있다. 진실치 못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로 된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그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민법상 의사표시가 그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것은 일정한 형식으로 표명되는 의사와 표시가 서로 불일치되는 경우들이 제기되는것과 관련된다. 이때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해석을 통해 그 일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결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한것으로 인정되면 민사법률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되지만 의사표시가 서로 불일치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되거나 취소될수 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난다. 실례로 판매자는 콤퓨터를 구매자에게 팔려고 하였는데 구매자는 그것을 증여로 잘못 인식하고 넘겨받은 경우를 들수 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주로 세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의사를 표시하는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있는것이다. 실례로 진실아닌 의사표시를 들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의사를 표시하는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것이다. 실례로 착오를 들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쌍방이 서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사전에 알고있는것이다. 실례로 허위적인 행위를 들수 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그 류형에 관계없이 민사법률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의사표시자는 물론 상대방의 재산상리익과 전반적인 민사법률관계에 심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는 그 해석을 통해 쌍방당사자의 리익과 전반적인 민사법률관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옳바로해결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들의 진실한 의사를 밝히는데 중심을 두고 쌍방당사자의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될수록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의사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와 표시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 의사와 표시를 결합하는 견해를 기본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의사표시를 어느 방식에 따라 해석 할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실사정을 놓고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는 의사표시에서 의사를 기본으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견해이다. 의사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에서는 의사표시는 의사를 기초로 하는것만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여부는 응당 의사를 중심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는 의사를 표시한자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지만 상대방의 리익과 민사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데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표시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는 의사표시에서 표시를 기본으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견해이다. 표시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에서는 의사표시가 비록 의사를 기초로 하지만 의사는 표시를 통해 외부에 전달되는것만큼 표시된 의사를 통해 진정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시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는 상대방의 리익과 민사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유리하지만 의사를 표시한자의 리익을 보호하는데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표시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에 따르면 사기나 강요로 인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게 된다.

의사와 표시를 결합하는 견해는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를 다같이 고려하여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견해이다. 의사와 표시를 결합하는 견해에서는 의사와 표시의 한 측면에만 치중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의사 또는 표시를 통해 진정한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와 표시를 결합하는 견해는 의사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와 표시를 기본으로 하는 견해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의사표시자와 상대방, 민사거래의 안정을 다같이 보장할수 있는 견해로 되고있다.

의사표시의 해석방식을 통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밝히는데서는 응당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하는데서 당사자가 사용한 문구와 내용, 행위 등을 놓고 그것이 해당 민사법률행위의 목적과 거래관습, 법적요구에 부합되는가를 밝히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진정한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형식을 기초로 한다. 의사표시의 기본형식에는 구두형식과 서면형식이 있다.

구두형식은 당사자의 말을 수단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형식이다. 구두형식은 당사자들의 직접대화나 전화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형식은 대상물이 수량적으로 적거나 즉시리행을 요구하는 민사거래관계에서 주로리용된다.

구두형식의 우점은 민사법률관계를 신속히 발생, 변경시키고 즉시에 종결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구두형식은 의사표시의 중요한 형식으로 되고있으며 계약체결을 비롯한 민사법률관계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구두형식의 제한성은 민사법률관계의 안정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는것이다. 구두형식은 당사자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것만큼 합의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그 정확성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말을 제외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에 의거할수 없으며 사실사정의 정확성여부를 명백히 가를수 없다. 이로부터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표시는 서면형식으로 할것을

요구한다.

서면형식은 당사자의 의사가 일정한 문서로 표시되는 형식이다. 서면형식은 문자로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 전보, 전자문서 등의 형식을 취한다. 서면형식은 주로 법인들과 공민들의 중요한 민사법률관계에서 리용되고있다.

서면형식의 우점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문서로 명백히 고착시킬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객관적인 립증수단으로 된다는데 있다. 이로부터 서면형식 은 구두형식에 비해 민사법률관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형식으로서 널리 리용되 고있다.

그러나 서면형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서면화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이것으로 하여 서면형식은 구두형식에 비해볼 때 민사법률관계의 신속성보장에서 일련의 제한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서면형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으로 구분할수 있다.

서면형식은 우선 설정근거에 따라 법정형식과 약정형식으로 구분할수 있다.

법정형식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서면화할것을 법에서 규제하고있는 형식이다. 서면형식을 법이 정한 경우 서면화할데 대한 요구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법적인 의무로된다. 법이 정한 서면형식으로는 법인들사이의 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은행대부계약, 합동작업계약,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언작성 등이 속한다.

약정형식은 의사표시를 서면화할것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하는 형식이다. 서면형식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한 경우에도 서면화할데 대한 요구는 의무적인것으로 된다. 약정형식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의 민사법률관계에서 설정될수 있다.

서면형식은 또한 해당 수속절차에 따라 일반서면형식과 특수서면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서면형식은 서면형식외에 다른 수속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면형식이다. 일반 서면형식은 서면화된 계약서나 확인서, 전보, 텔렉스, 확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서면 형식에서는 문서형태에는 관계없이 다같이 서면이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기초하여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특수서면형식은 서면형식외에 법이 특별히 정한 수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서면형식이다. 특수서면형식에서 당사자들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것외에 일련의 법적수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수서면형식에서 당사자들이 걸쳐야 하는 수속절차로는 공증이나 국가기관의 심의비준, 등록 등을 들수 있다.

공증형식은 서면으로 작성된 의사표시에 대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나 일정한 법률사실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공증은 서면형식의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공증을 의무적인절차로 규정한 의사표시는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공증형식에는 부동산계약이나 법인들사이의 합동작업계약 등이 속한다. 공증형식은 필요한 경우 민사법률관계 당사자들이 합의로도 정할수 있다.

심의비준형식은 서면으로 작성된 의사표시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의 심의비준을 요 구하는 형식이다.

심의비준형식을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는 서면형식과 함께 국가기관의 심의비준을 효

력발생조건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심의비준을 받지 않거나 심의에서 부결되는 경우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심의비준은 주로 법인들사이의 계획적계약관계를 비롯한 중요한 민사법률관계들에서 적용된다.

등록형식은 서면으로 작성된 의사표시에 대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할것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등록형식은 당사자들이 해당 행위를 등록기관에 서면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등록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형식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저당계약 등을 들수 있다.

우리는 의사표시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그것을 민사실천에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민사법률관계를 통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민법, 의사표시